

한국방재협회 공고 제2024-19호

##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공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
한국방재협회장

<붙임>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현황. 끝.